

울산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123396 판결 [사해행위취소]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덕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5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E 주식회사는 2017. 12. 21. B에게 6,200만 원을 60개월 원리금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 2) E 주식회사는 2020. 7. 20. 주식회사 F에게, 주식회사 F는 2020.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B에게 통지되었다.
- 3) 2021. 11. 29. 현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액은 원금 55,193,234원, 이자 24,476,570원의 합계 79,669,804원이다.

#### 나. B의 피고에 대한 증여

- 1) 피고는 2004. 12. 30. B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8. 4. 17. B과 협의이혼 하였다.
- 2) B과 피고는 2013. 8. 3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B은 2018.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8. 2. 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4)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8. 30.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163,400,000원(당초 204,000,000원에서 2016. 2. 3. 163,400,000원으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7. 17.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36,000,000원으로 하는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2. 4. 채무자 B, 근저당권자 H조합, 채권최고액 84,000,000원으로 하는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 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처분

피고는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3.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1 내지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 라.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금 기준으로 422,825,73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중 1/2 공유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 마. 소송수계

B은 2022. 2. 7.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21하단5340호)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A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파산자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가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이를 부인할 수 있다. 채무자는 이 사건 증여 이후 I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인 3억 7,000만 원에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인 2억 6,340만 원을 공제한 1억 660만 원 중 B의 1/2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5,3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B은 피고와 협의이혼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로 이 사건 아파트 중 1/2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자녀양육비를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의 혼인기간이 14년에 이르고 피고가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면서 부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친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보유 자산 규모 대비하여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고 외도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의 귀책사유는 B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B과 이혼하면서 2006년생과 2012년생인 미성년 자녀 2명을 모두 피고가 양육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피고의 자녀 모두 질병을 앓고 있어 양육비

외에도 상당한 치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증여를 받은 외에 B으로부터 별도의 양육비나 치료비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부담하는 채무가 피고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와 B은 2018. 1. 3.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8. 4. 17. 협의이혼 하였는바 협의이혼 신청 이후인 2018. 2. 1.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B은 장차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과도한 재산분할로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산

[별지]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울산광역시 중구   동[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공동주택(아파트)

12층 440.95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9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울산광역시 중구  대 2901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9014분의 61.047㎡

(이 중 소외 의 지분 2분의 1 전부)

